<u>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</u>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,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2007년 12월 개정되고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「옥외광고물법」 실명제에 따라 서울시는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, 현행 서울시 조례는 다른 시·도와는 달리 <u>타사광고</u>(건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)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<u>자사광고(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)에 대</u>한 실명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.

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<u>실명제 대상에 자사광고를 포함</u>하는 한편, 현실적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실명제 표시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.

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! 그리고 도시계획관리 위원 여러분!

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